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12. .

국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1월 20일, 윤준병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2025년 1월 21일

다. 상정일자 및 의결일자: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방위원회(2025.9.2.)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25.11.25.)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
반영폐기)

제8차 국방위원회(2025.11.27.)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
(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윤준병 의원)

현행 「군인사법」은 영내징계위원회 개최 시 최소 3명 이상의 선임자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번 12·3 비상계엄 사

태에 따른 내란 사건에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하여 군 수뇌부가 대거 가담하여, 징계처분 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자가 3인 미만이 발생하였을 때는 징계위원회 자체가 구성될 수 없음.

이에 징계처분 심의 대상자의 계급이 장성급으로서, 3인 이상의 선임자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국방부장관 직속으로 ‘장성급 장교 징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9인의 비상임 징계위원으로 구성하되, 그중 국방부장관이 각 군에서 1인, 합참에서 1인, 민간에서 5인의 군사 또는 법률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도록 하고, 위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방부장관 직속 장성급 장교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은 장군 보직 해임 시 자동 전역 되도록 규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 필요한 초동조치를 할 수 없음. 이러한 법 규정 때문에 군 검찰의 조사를 받기 위해서는 피의자의 직책을 그대로 유지한 채 조사를 받게 되어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수사 및 징계로 인한 장군의 직위 해제 또는 보직 해임의 경우 현역에서 전역되지 아니하게 함으로써 관할 군 검찰의 공정한 조사를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2항 단서, 제20조제3항 단서 및 제58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징계대상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인 장교가 부족하여 징계위원회·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각 군 및 민간위원을 위촉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함.

장성급 장교가 직위해제, 해임 또는 면직되더라도 자동으로 전역되지 않도록 하여, 군 내부에서 수사 및 징계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장성급 장교와 비장성급 장교 간의 계급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군 복무 중 발생한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부승찬)

선임자가 없어 징계위원회·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안규백의원안 중 국방부차관을 제외한 대장 계급의 장교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장성급 장교가 직위해제, 해임 또는 면직되더라도 자동으로 전역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은 타당성이 있으므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반영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